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화성시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채용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5월 11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63호

채용 규칙 일부 개정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채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얻은 후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